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-11호

「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5월 1일

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고

1. 개정이유

대전광역시 명예시민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배려로 대전의 후원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명예시민증 수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명예시민증 수여대상 범위를 규정함(안 제2조).
- 나.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결정 및 동의방식을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명예시민증 수여방법 및 부상을 규정함(안 제4조).
- 라.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한 예우 및 혜택을 규정함(안 제6조).
- 마.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기록물 관리 규정함(안 제7조).

3. 의견제출

- 가. 이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(참조: 행정자치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의견제출 사항
 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 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- 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02-789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(전화 042-270-5124, FAX 042-270-5029, E-mail : sjulee2000@korea.kr)
- 라. 의견제출 방법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4. 개정 조례안 : 붙임

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대전광역시를 방문하는 귀빈(외국인, 해외교포, 타시도 출신인사)에게 수여하는 명예시 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수여대상) ① 대전광역시장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은 내·외국인 중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(이하"명예시민증"이라 한다)을 수여할 수 있다.
 - 1. 국외에서 국제교류 및 시책추진에 협력한 자
 - 2. 대전광역시를 방문하는 외국인, 해외교포, 다른 시·도 출신인사 중 시정에 공로가 있는 자
 - 3. 대전광역시의 문화·예술·체육 등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대전광역시의 위상을 제고한 자
 - 4. 과학·기술·경제 분야에 이바지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
 - 5.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퇴임한 기관 또는 단체장 중 시정에 공로가 있는 자
 - 6. 그 밖에 그 공로로 보아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 - ②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가 고인인 경우 유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.
- 제3조(수여대상자 결정 및 동의) 시장은 대전광역시의회(이하"시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. 다만, 시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.
- 제4조(수여방법 및 부상)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는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패를 수여한다. 이 경우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

수 있다.

- ②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패의 문안, 규격, 형태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5조(권리와 의무)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 「지방자치법」제13조제1항의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의 의무를 지게 할 수 있다.
- 제6조(예우 및 혜택) 시장은 명예시민에 대하여 예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치·운영하는 공공 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- 제7조(기록물 관리)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장, 공로조서 등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기록물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.
- 제8조(명예시민증의 취소)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 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.

부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 여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관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